

「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장미경 의원 외 15인

2. 제안이유

- 각종 제조시설과 축산업 및 도축업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또는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·사업자·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각종 사업장 인·허가시 고려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과 악취 저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3조)
- 정보의 공개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~제1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, 제3조
- 「축산법」 제2조, 제42조의13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악취방지법」 제3조제2항¹⁾에 따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6조에서는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, 악취 발생지역 현지조사 실시와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1) 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안 제8조에서는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,
「축산법」 제42조의13제3항²⁾에 따라 매년 축산환경 개선
실행계획 수립으로 축사시설의 현황·축산환경 현황 및
진행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
높이고 축산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
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10조에서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,
악취 민원시설에 대한 지도·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
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 등에
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호와 주민의 생활여건 증진에
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
환경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 지역 내 악취
문제에 대한 감시·제보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의
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2) 제42조의13(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)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·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
시·군·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다만, 환경감시단의 운영 실적 관리, 구역별 감시 지역 배분 등 체계적인 환경감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4조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,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의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